

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0. 18. 제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10. 18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10. 25.(제1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성웅)

가. 제안사유

○ 2006. 6. 29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9567)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사증명과의 형평성 유지

○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"석유판매업(주유소)" 등록을 "석유판매업등록 및 신고"로, "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등록"을 "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"으로 개정

나. 주요내용

○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"개별공시지가·개별주택가격·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"를 각 400원에서 800원으로, "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"를 500원에서 800원으로, 토지(임야)대장 등본에 의한 개발공시지가 확인을 삭제,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을 석유판매업등록 및 신고로,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등록을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으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지방자치법 제130조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

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,

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(별첨)와 같다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할 수 있다고 하므로써

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외 3건에 대하여 각각 400원에서 800원으로 고시 되어 있으므로, 조례개정은 10%범위인 720원에서 880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우리시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볼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한 것이지요?(박성하의원)

- 예,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의 필요성이 있어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낸 개정안입니다.(세정과장 박성웅)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